

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(주차방해) 등 위반 기준

1. 위반 여부 판단(적용) 기준

가. 불법주차(과태료 10만원)

○ 기준에 맞지 않게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

- 크기(3.3m×5m)가 맞지 않거나 안내표지판이 없어도 주차공간의 바닥면에 장애인전용표시가 표시되어 있으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해당되므로 불법주차 시 과태료 부과 대상
- 해당 건물이 편의시설 설치 의무시설인 경우 기준에 맞게 설치하도록 시정명령, 의무시설이 아닌 경우 기준에 맞게 설치 권장

○ 보행장애인이 타고 있지 아니한 차량

- 주차표지가 부착된 차량에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이 동승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 촬영*된 동영상 확인

* 차량 탑승자 하차 시 탑승자 중 보행상 장애인이 없음을 신고인이 촬영

나. 주차방해행위(과태료 50만원)

○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·뒤(또는 양측면)에 주차(이중주차, 일렬주차)

- (동영상) 전용 주차구역의 앞 또는 뒤에 차량을 주차하고 운전자가 차량에서 하차하여 차량도어를 잠근 후 이동하는 상황이 촬영된 동영상
- (사진) 전용 주차구역의 앞이나 뒤에 고의로 차량을 주차한 상황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사진* (밀려서 주차된 차량과 구별할 필요)

* 차량이 바퀴가 잠긴상태(파킹모드, 사이드브레이크 등)로 주차 / 전용 주차구역 단독으로 설치된 주차구역에 이중 주차 / 주변 상황에 비추어 일반주차구역의 차량이 밀려서 전용 주차구역으로 이동이 불가능한 사례 등이 사진으로 확인된 경우

○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침범(양 측면, 앞·뒷면)

- 하나의 차량이 2면 이상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걸쳐서 주차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동영상 또는 사진

○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에 물건 등을 쌓은 경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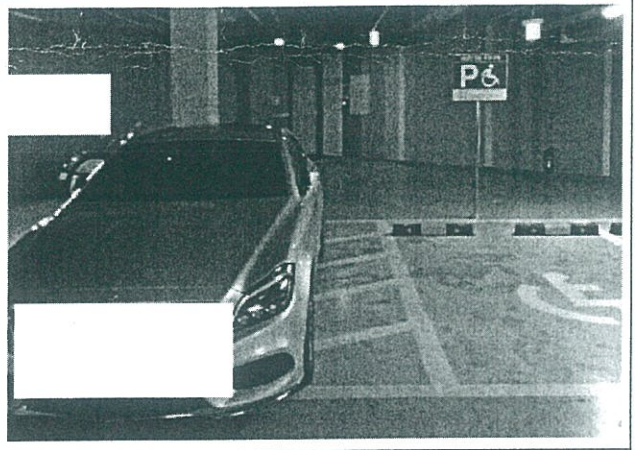
- 주차구역에 물건이 쌓여 있는 것이 동영상 또는 사진으로 확인 되면 반드시 지자체 담당자가 현장단속을 통해 물건 등을 쌓아 놓은 위반행위자를 확인한 후 현장 시정조치하고 과태료 부과

- 현장단속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자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, 주차구역을 관리하는 시설주에게 쌓아 놓은 물건 등을 치우도록 현장 시정 조치하고 과태료 부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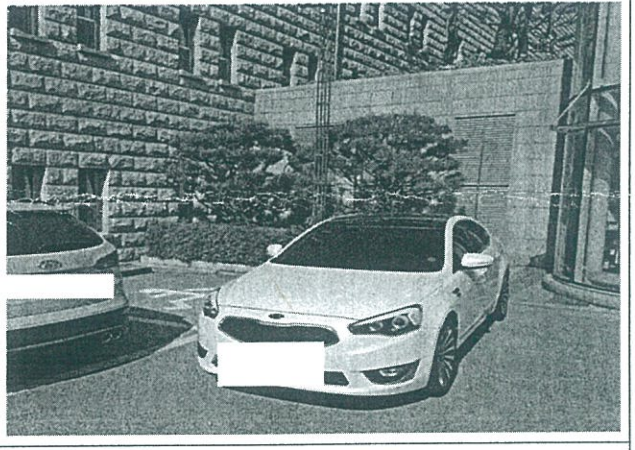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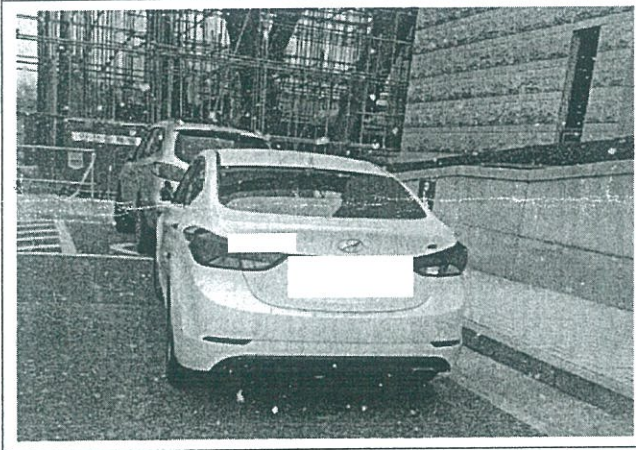
* (유사 사례) 도로교통법 상 과속, 신호위반 등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시 위반행위 당사자인 실제 운전자를 확인하기 어려워 차량 소유자에게 우선 부과하고, 위반 운전자가 확인될 경우 해당 운전자에게 부과

2. 위반 사례(참고자료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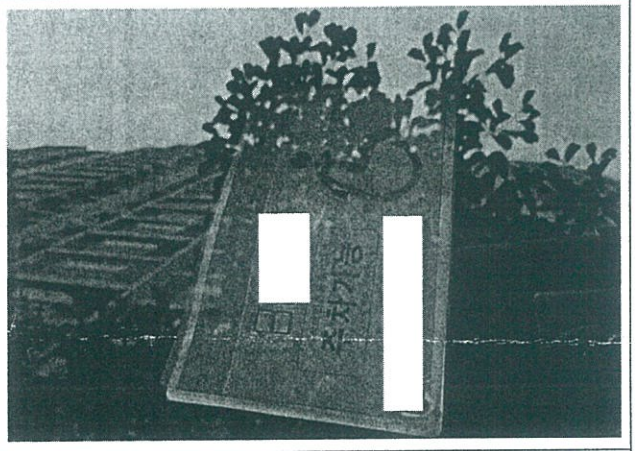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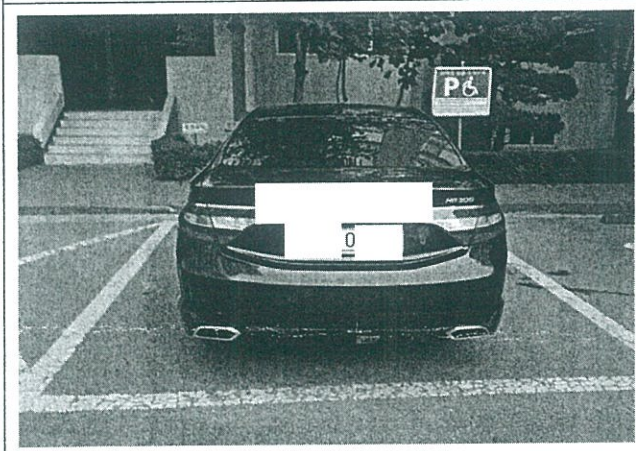
붙임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등 적발 사례



비장애인 차량 불법주차 [과태료 10만원]



‘주차방해 행위’ 차량 [과태료 50만원]



‘주차가능’표지 부정사용(차번호는 ‘0***’이나 주차표지는 ‘8***’) [과태료 200만원]